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업기술혁신촉진법」(법률 제20198호, 2024. 2. 6. 공포, 2024. 5.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현행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맞춰 하위법령 조문 정비(안 제8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제2항에는 “각 호 외의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현행 상위법령의 조문에 맞춰 하위법령의 조문 정비
- 나. “산업기술평가관리원(평가관리원)”을 “산업기술기획평가원(기획평가원)”으로 변경(안 제11조, 제31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7조)
- 다.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4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2024. 3. 11. ~ 3.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3. 11. ~ 4.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7조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을 “한국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3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획평가원

제45조제1항 중 “평가관리원”을 “기획평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을 “기술진흥원·기획평가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으로,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정관”을 “기술진흥원·기획평가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을 “기술진흥원·기획평가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으로,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이사회”를 “기술진흥원·기획평가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이사회”로 한다.

제46조 중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을 “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세라믹기술원”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을 “기술진흥원·기획평가원·세라믹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평가관리원”을 “기획평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을 “기술진흥원·기획평가원·세라믹기술원”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을 “기술진흥원·기획평가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으로,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사업”을 “기술진흥원·기획평가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사업”으로,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를 “기술진흥원·기획평가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서”를 “기술진흥원·기획평가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서”로,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를 “기술진흥원·기획평가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을 “기술진흥원·기획평가원·세라믹기술원”으로 한다.

제49조 중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을 “기술진흥원·기획평가원·세라믹기술원”으로 한다.

제50조 중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을 “기술진흥원·기획평가원·세라믹기술원”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을 “기술진흥원·기획평가원·세라믹기술원”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및 제3항 중 “평가관리원”을 각각 “기획평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평가원

제57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평가원

별표 4 제2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3호	100만원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술지원 공공기관) <u>법 제7조제2항</u>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5. (생 략)	제8조(기술지원 공공기관) <u>법 제7조제2항</u> ----- ----- -----.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 기관) <u>법 제11조제2항</u>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 략) 2. <u>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 기술평가관리원(이하 “평가관리원”이라 한다)</u> 3. ~ 15. (생 략)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 기관) ----- ----- -----.
제31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u>법 제19조제2항</u>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1. ~ 3. (생 략) 4. <u>평가관리원</u> 5. ~ 9. (생 략)	제31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기획평가원</u> 5. ~ 9. (현행과 같음)

제45조(원장) ① 기술진흥원, 평가관리원,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 각각 원장을 둔다.

②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기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각각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사업연도)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제45조(원장) ① ----- 기획평가원-----
-----.

② 기술진흥원·기획평가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 --- 기술진흥원·기획평가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정관

--.

③ 기술진흥원·기획평가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 ----- 기술진흥원·기획평가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이사회-----

--.

제46조(사업연도) 기술진흥원·기획평가원·세라믹기술원 ----

-----.

제4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기술진흥원·기획평가원·세라믹기술원 -----

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생략)

2. 평가관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3. 4. (생략)

③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때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3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② -----

-----.

1. (현행과 같음)

2. 기획평가원-----

3. 4. (현행과 같음)

③ 기술진흥원·기획평가원·세라믹기술원 -----

-----.

1. ~ 4. (생 략)

제48조(전문인력의 확보 등) ①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
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사업 등
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과 협약을 체
결하여 해당 대학에서 기술 분
야의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기술진흥원·평가관리
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
수행하는 해당 분야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 또는 대학
원의 학생이 기술진흥원·평가
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
원에서 「직업교육훈련 촉진
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기술진흥원·평가
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
원의 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
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1. ~ 4. (현행과 같음)

제48조(전문인력의 확보 등) ①

기술진흥원·기획평가원·세라
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
기술진흥원·기획평가원·세라
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사업 --

---- 기술진흥원·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 -

-----.

② -----
----- 기술진흥원·기획평
가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
에서 -----

----- 기술진흥원·기획
평가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
원의 -----
-----.

③ 기술진흥원·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

때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구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는 등 현장실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9조(공동사업의 촉진)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전문인력의 교류 및 기술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대학·기술 관련 분야의 연구소 및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간에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50조(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 법 제38조제5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

제49조(공동사업의 촉진) 기술진흥원·기획평가원·세라믹기술원 -----

-----.

제50조(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기술진흥원·기획평가원·세라믹기술원 -----

하여야 한다.

제51조(협약에 따른 출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술진
흥원 · 평가관리원 · 세라믹기술
원 및 시험원에 출연을 하려면
해당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57조(권한의 위임 · 위탁 등)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실시
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
는 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
는 평가관리원에 위탁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

제51조(협약에 따른 출연 등) ①

----- 기술진
흥원 · 기획평가원 · 세라믹기술
원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권한의 위임 ·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획평가원-----.

③ -----

-- 기획평가원-----.

④ -----

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평가관리원

2. 3. (생략)

⑤ ⑥ (생략)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기관 위탁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총괄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략)

2. 평가관리원

3. (생략)

⑧ ~ ⑩ (생략)

-----.

1. 기획평가원

2. 3. (현행과 같음)

⑤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현행과 같음)

2. 기획평가원

3. (현행과 같음)

⑧ ~ ⑩ (현행과 같음)

별표 4 제2호

(신 설)

별표 4 제2호

다. 법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한국
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3호

100
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4512